#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
# 출연 승인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15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   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가 개정됨에 따라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   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: 166백만원
   - 산정기준 : 목표액('08~'17)에 따라 매년 166백만원씩 출연
   ※ 성주군 목표액('08~'17) : 1,660백만원**(도 전체 목표액의 2%)**
   ※ 성주군 조성총액('93~'15) : 2,848백만원

3.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주요내용
   ○ 신 청 자 격 : 농어업인, 농어업인단체, 농어업법인, 농어업관련기업체 농협·수협 등 생산자 단체
   ○ 지원 한도액 : 개인 2억원, 법인 5억원
   ○ 지 원 조 건 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   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
4. 참고사항

  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,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, 「행정자치부 훈령」,
   〈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〉
   나. 예산조치 : 2016년 당초예산 편성(166백만원)
   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